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5
----------	----

제출년월일 : 2018. 9. 20.

제 출 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3조)
-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제5조)
- 다. 실태조사(안 제6조)
- 라. 지원사업(안 제7조)
 - 돌봄서비스·응급상황 대처·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 공유 주택 등 주거지원
 -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 건강 지원 사업
 -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등

- 구청장의 예산 지원 가능

마.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안 제8조)

바. 사무의 위탁, 포상, 시행규칙(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건강가정기본법」

2)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편성 계획

다. 합 의 : 부서 의견 수렴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8.23. ~ 2018.9.12.)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의견없음

4) 성별영향 평가 : 여성보육과 의뢰 결과 개선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나. 조 례 안 : 제7조(지원사업)

다. 세출요인 : 1인가구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문화·여가생활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1인가구 지원사업 실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사회안전망 구축		245,6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365,600
	○문화활동지원		4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40,000
	○맞춤형 생활지원		25,000	30,000	30,000	30,000	30,000	145,000
	○위탁 운영비		108,000	110,000	110,000	130,000	130,000	588,000
	소계(b)		418,600	470,000	470,000	490,000	490,000	2,338,600
□ 총 비용(a-b)			418,600	470,000	470,000	490,000	490,000	2,338,6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자체	지방세수입	418,600	470,000	470,000	490,000	490,000	2,338,600
	수입	세외 수입						
		보 조 금						
	의존	지방교부세						
재원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기타								
합계			418,600	470,000	470,000	490,000	490,000	2,338,600

- 재원조달 : 구비 100%
- 5. 덧붙이는 의견
- 6. 작성자 : 가족정책과 미래정책기획팀 장혜진(02-2155-8898)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 245,600천원

- 안부돌봄 문안서비스 : 96,000천원
 사용료 66,000천원+서버개발 30,000천원=96,000천원
- 건강취약가구 간병서비스 : 100,000천원
 $100,000\text{원} \times 1,000\text{회} = 100,000\text{천원}$
- 스마트 안심벨 지원 : 39,600천원
 $39,600\text{원} \times 1,000\text{명} = 39,600\text{천원}$
- 방범서비스 설치 지원 : 10,000천원
 $100,000\text{원} \times 100\text{명} = 10,000\text{천원}$

2. 문화교실 등 문화여가 생활지원 : 40,000천원

- 문화교실 운영 : 12,000천원
 $500,000\text{원} \times 2\text{회} \times 12\text{월} = 12,000\text{천원}$
- 동아리 지원 : 24,000천원
 $100,000\text{원} \times 20\text{그룹} \times 12\text{월} = 24,000\text{천원}$
- 만남프로그램 운영 : 4,000천원

3.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 : 25,000천원

- 생활불편해결 서비스 : 15,000천원
 $50,000\text{원} \times 300\text{회} = 15,000\text{천원}$
- 생활상담 및 심리상담 서비스 : 10,000천원
 $100,000\text{원} \times 100\text{회} = 10,000\text{천원}$

4. 1인가구 지원사업 위탁운영비(인건비) : 108,000천원

- $3,000,000\text{원} \times 3\text{명} \times 12\text{개월} = 108,000\text{천원}$